

審 查 報 告 書

1. 審査經過

- 가. 提出日字 : 2000. 12. 16
- 나. 提出者 : 瑞山市長
- 다. 回附日字 : 2000. 12. 18
- 라. 上程日字 : 2001. 2. 14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地域經濟課長 南圭宗)

가. 提案理由

-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직위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코자 함

나. 主要骨子

-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위 하향조정(안 제13조제3항)
-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직위 하향조정(안 제13조제4항)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본 개정조례안은 서산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기금의 융자대상업체 선정, 융자금액, 사업계획의 심사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고자 융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직위를 하향조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수정가결

※ 수정안 - 별첨

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제13조제3항 “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를 “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”로 한다.
- 제13조제4항제2호를 “사회산업국장”으로 하고, “제2호”를 “제3호”로, “제3호”를 “제4호”로, “제4호”를 “제5호”로, “제5호”를 “제6호”로, “제6호”를 “제7호”로, “제7호”를 “제8호”로, “제8호”를 “제9호”로 한다.

수정안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3조(용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)</p> <p>③위원장은 <u>사회산업국장</u>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 <u>서산시의회의원(총무위원회)1인</u></p> <p>2 <u>기획감사담당관</u></p> <p>3 <u>회계과장</u></p> <p>4 <u>서산시상공회의소 진흥과장</u></p> <p>5 <u>충청하나은행서산지점 여신담당</u></p> <p>6 <u>농협중앙회서산시지부 여신담당과장</u></p> <p>7 <u>신용보증기금서산지점 보증총괄팀장</u></p> <p>8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위촉한 자</p>	<p>제13조(용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)</p> <p>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----- ----- -----</p> <p>1 <u>서산시의회의원(총무위원회)1인</u></p> <p>2 <u>사회산업국장</u></p> <p>3 <u>기획감사담당관</u></p> <p>4 <u>회계과장</u></p> <p>5 <u>서산시상공회의소 진흥과장</u></p> <p>6 <u>충청하나은행서산지점 여신담당</u></p> <p>7 <u>농협중앙회서산시지부 여신담당과장</u></p> <p>8 <u>신용보증기금서산지점 보증총괄팀장</u></p> <p>9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위촉한 자</p>

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44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2. 16.

제출자 : 서 산 시 장

1. 개정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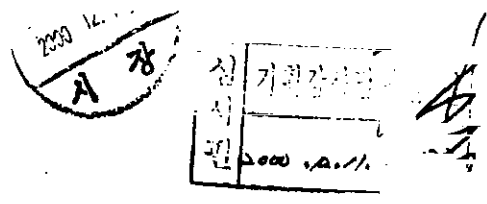
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직위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코자 함

2. 주요 골자

-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위 하향 조정(안제13조제3항)
-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직위 하향 조정(안제13조제4항)

3. 참고 사항

- 근거 법령
 - 해당없음
- 입법 예고
 - 서산시 공고 2000-333호(2000. 9. 25 ~ 10. 14)
 - 제출 의견 없음
- 예산 관련
 - 해당없음
- 기 타
 - 행정자치부 「일하는 방식」 개선 지침



서산시조례 제 호

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부시장” 을 “사회산업국장” 으로 한다.

제13조제4항 중 “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.서산시의회총무위원회위원장 2.사회산업국장 3.기획감사담당관 4.회계과장 5.서산상공회의소회장 6.충청하나은행 서산지점장 7.농협중앙회서산시지부장 8.신용보증기금서산지점장 9. 충청남도중소기업협의회 서산시위원 10.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”를 “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.서산시의회의원(총무위원회)1인 2. 기획감사담당관 3.회계과장 4.서산상공회의소 진흥과장 5.충청하나은행서산지점 여신담당 6.농협중앙회서산시지부 여신담당과장 7.신용보증기금서산지점 보증총괄팀장 8.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개	정	안
제13조(음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)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제13조(음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)③ ----- 사회산업국장 -----		
제13조(음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)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	제13조(음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)④ -----		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서산시의회총무위원회위원장 2 사회산업국장 3 기획감사담당관 4 회계과장 5 서산상공회의소회장 6 충청하나은행서산지점장 7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장 8 신용보증기금 서산지점장 9 충청남도 중소기업협의회 서산시위원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위촉한 자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서산시의회의원(총무위원회)1인 2 기획감사담당관 3 회계과장 4 서산상공회의소 진흥과장 5 충청하나은행 서산지점 여신담당 6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 여신담당과장 7 신용보증기금 서산지점 보증총괄팀장 8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위촉한 자 		